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57
----------	-----

2023년 7월 3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5월 30일, 강석주 의원 등 9인
2.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3. 상정일자 :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위원회  
(2023년 7월 3일 상정·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강석주 의원)

### 1. 제안이유

-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법정 의무비율인 1% 이상 구매해야 함
-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0년 0.87%(본청 1.2%, 지원청 0.77%), 2021년 0.78%(본청 1.24%, 지원청 0.65%), 2022년 0.62%(본청 0.77%, 지원청 0.58%) 등 최근 3년동안 법

정의무 비율인 1% 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있으나,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다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업보다 우선 적용해야 하는 사항과 법정의무비율 등 특별법의 목적 달성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제정하여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들의 고용기회 확대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 및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 소속기관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강석주 의원 등 9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857호로 공동 발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적·경제적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복지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sup>1)</sup>.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촉진하면서, 회계연도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생략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③ 생략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sup>2)</sup>.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조례’ )」에 근거하여 ‘서울시교육청 공공구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배려기업 제품 구매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추진체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 속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사회적배려기업 제품의 구매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사회적경제기업과 달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인 바,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대부분이 복사용지나 화장지류, 인쇄물 등 저가상품이라는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sup>3)</sup>

- 그러나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는 단순히 교육청의 자의에 따라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에 따라 공공기관 별로 구매목표비율을 별도로 설정하여 의무적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제도 정비와 함께 구매 품목 발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중증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3)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2023.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2023년 공공구매 활성화 계획.

장애인들의 사회적·경제적 자립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례, 제5조에 우선구매 대상기관, 제6조에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 계획의 수립, 제7조에 우선구매 의무, 제8조에 홍보, 제9조에 소속기관 평가 및 포상의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 및 체계 등에 있어 「자치법규 입법실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 측면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 계획의 수립에 대한 검토(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제2항제2호를 통해 동 계획에 전년도 우선구매 실적 및 구매목표 비율을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와 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교육감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사회적배려기업 제품 구매 내역을 8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매년 법정비율, 목표비율, 구매비율 등에 대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바,

2022년도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8가지 카테고리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제품은 모두 법정비율과 목표비율을 달성하였으나, 정작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에는 법정비율 및 목표비율을 1%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비율은 0.5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표-1] 서울시교육청 2022년 사회적배려기업 제품 구매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	창업기업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공사	용역						
법정비율	50	5	3	5	1	15	8	0.6	1	자체계획
목표비율	88	8	8	12	1	15	8	0.6	1	3.9
구매비율	82.08	11.85	22.85	17.06	1.68	16.2	2.45	2.32	0.58	7.3
구매금액	1,608,585	102,953	134,664	85,617	32,878	109,720	48,042	31,750	7,880	99,815
충족여부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충족

○ 이와 같이 사회적배려기업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서울시교육청의 우선구매 실적이 매우 우수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나, 개별 기업군으로서의 중증장애인생산품만 별도로 놓고 보았을 경우 우선구매 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더욱이 이와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타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상태인 바,

2022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의 구매실적은 0.62%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게 나타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향상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보다 심도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표-2 참고).

○ 이런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을 명확히 규정안 제6조제3항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사료됩니다.

○ 아울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제10조제3항<sup>4)</sup>에 따라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면서 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조례로 정한 비율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6조제3항에서 구매목표비율을 법정비율인 100분의 2 이상으로 하면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한 것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833, 2023.6.8.).

[표-2] 2022년 시·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단위: 원, %)

연번	기관명	2022년도 구매실적			연번	기관명	2022년도 구매실적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비율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비율
	○ 총계	9,054,260,235,625	86,717,380,992	0.96	9	강원도교육청	380,302,090,984	3,454,422,630	0.91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① ~ ② 생략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연번	기관명	2022년도 구매실적			연번	기관명	2022년도 구매실적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비율			총 구매액	우선구매액	비율
	○ 총 계	9,054,260,235,625	86,717,380,992	0.96	9	강원도교육청	380,302,090,984	3,454,422,630	0.91
1	서울특별시교육청	1,370,394,437,085	8,564,810,721	0.62	10	충청북도교육청	422,163,625,913	4,038,434,042	0.96
2	부산광역시교육청	523,794,367,645	4,055,850,495	0.77	11	충청남도교육청	537,484,018,345	4,592,218,210	0.85
3	대구광역시교육청	407,570,044,354	4,681,582,141	1.15	12	전라북도교육청	445,143,492,743	5,533,059,512	1.24
4	인천광역시교육청	524,107,567,462	7,441,422,110	1.42	13	전라남도교육청	545,573,404,977	3,423,416,194	0.63
5	광주광역시교육청	241,521,366,317	5,410,742,587	2.24	14	경상북도교육청	536,196,514,328	5,553,545,501	1.04
6	대전광역시교육청	198,695,055,061	3,369,609,710	1.70	15	경상남도교육청	658,617,149,414	9,394,203,880	1.43
7	울산광역시교육청	359,953,398,701	2,685,823,990	0.75	1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196,960,493,835	2,127,181,340	1.08
8	경기도교육청	1,552,962,249,745	10,870,498,549	0.70	1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152,820,958,716	1,520,559,380	0.99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6조(우선구매이행 및 촉진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그 소요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선구매이행 및 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
2.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 및 구매목표비율

3. 우선구매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총구매액(제품과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의무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구매실적이 제6조제3항의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구매실적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홍보)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소속기관 평가 및 포상) ① 교육감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인 소속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 또는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